

# 충청북도매포공해지역이주대상자에 대한도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내 무 위 원 회  
1993. 12. 6.

###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3년 12월 1일

. 회부일자 : 1993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 97 회 정기회

. 제 9 차 내무위원회 (1993. 12. 6.)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내무국장 조영창)

가. 제안이유

- 매포공해지역 이주대상자에 대한 보상협의지연으로 도조례 시행기간인 '93. 12. 31까지, 보상금 지급에 따른 1년 이내의 부동산 대체취득이 불가함에 따라,
- 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과세면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대상자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 부득이 동조례의 시행기간을 1년간 연장 시행하여 이주대상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나. 주요골자

- 동조례 부칙 3항의 시행기간을 '94. 12. 31까지로 개정  
— 현행) '93. 12. 31. → 개정) '94. 12. 31.

## 3. 전문위원 검토요지

( 전문위원 윤 태 무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공해지역 이주대상자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단양군 매포지역내 공해피해 주민의 이주대책추진과 아울러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92. 7. 31일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공해지역 이주대상자에 대하여 도세과세 면제조례를 제정 '93. 12. 31까지 한시조례로써 운영하여 왔으나

동조례의 적용시한 도내에도 불구하고 토지16필지 및 건물7동에 대하여 행불 또는 보상거부 및 포기등의 사유로 인한 보상금 미지급자가 있는바 이에따른 보상금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과세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대상자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부득이 동조례의 시행기간을 '94. 12.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이주대상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과세 및 면제형평을 기하는 측면에서 볼때 승인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 론 요 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 사 결 과 : 도 원안대로 의결(참석 7인, 찬성 7인)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 충청북도 매포공해지역 이주대상자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 신구조문 대비표